

<p>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p>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 제1항 중 “3월이내”를 80일이내로 한다. 제31조를 삭제한다.</p> <p><b>부 칙</b></p> <p>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1항중 “3월이내”를 “80일이내”로 한다. ②서울특별시 재해대책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1항중 “3월이내”를 “80일이내”로 한다. ③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3항중 “3월이내”를 “80일이내”로 한다. ④서울특별시식품전홍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1항중 “3월이내”를 “80일이내”로 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2항 제1호중 “기타의 사유”를 “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”로 한다.</p> <p>제17조제2호중 “가능성이 없는 때”를 “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때”로 하고,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.</p> <p><b>부 칙</b>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안 제6조제2항중 “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”를 “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”로 하고</li> </ul>	<p>안 제11조제1항 제9호 및 제12조제1항 제19호 중 “경제여건변화,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, 환경오염방지”를 “경제여건변화, 환경오염방지”로 하며,</p> <p>안 제13조제2항 중 “준공업 지역안의 용자 대상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”를 “준공업 지역안의 용자 대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</p> <p><b>제1장 총 칙</b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전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중소기업자”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.</li> <li>2. “중소기업운전자금”(이하 “운전자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.</li> <li>3. “중소기업시설자금”(이하 “시설자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자동화·정보화·기술개발 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아파트형공장건설·시장재개발·시장시설개선·공동창고설치·점포시설개선·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.</li> <li>4. “창업”이라 함은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li> <li>5. “중소기업지원시설”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창업보육, 시제품·기술·연구개발 등을</li> </ol>
--	---